

보도

시간강사 처우 개선 TF, '사과' 벽에 막혀 제자리

- 대안1. 유명무실 시간강사규정 개정통해 '학기 제한' 폐지
 대안2. 연속 학기 위촉 강사에게 와이파이, 중앙도서관 이용 허용
 대안3. 전체 대학 평균 수준의 시간강사 강의료 인상

후마니타스칼리지 시간강사

김도엽 기자 wogmd567@knu.ac.kr

#. 우리신문은 올해 2월, 작년 12월 24일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시간강사 45명이 '교과과정 개편을 이유로 강의 비개설을 알리는 미위촉 통 메일을 받았으며, 교과과정 개편에 시간강사 의견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도했다. 올해 5월에는 전임교원, 객원교수, 시간강사를 포함한 후마니타스 교육자협의회(교협)에서 시간강사 처우개선 TF운영을 하자는 제안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해촉 통지 사건이 시간강사 처우 개선의 발단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현재 해촉 통지를 받은 45명 중 한 명인 채효정 시간강사는 청운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집회(강의 실 밖 수업)를 열고 있으며, 12월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5월에 제시된 TF는 현재까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곧 논란의 '해촉' 통지 발단이 일어난지 1년이 된다. 우리신문은 후마 유정완 학장과, 채효정 시간강사를 각각 만나 상이한 입장을 들어봤다.

우선 양 측의 입장은 후마 측의 TF구성 논의 조건인 '강의 미위촉에 대해 근거 없는 부당한 정보를 언론사에 투고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할 것'부터 상이하다. 유 학장은 이번 인터뷰를 포함한 모든 인터뷰에서 "근거 없는 정보를 언론사에 투고했으므로 학교에 손실을 입혔다"며 "이에 대해 공개 사과하기 전까지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채 강사는 "공개 사과는 노동 탄압이며 대학에서 있을 수 없으며 할 수 없는 요구다"라며 "부당한 정보를 언론에서 보도했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하거나 해당 언론사에 반론권을 요청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 논란은 채 강사가 올해 5월, 9월 지방 노동위원회(지노위)-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학교 측의 부당해고'에 관해 구제 신청을 하며 계속 이어졌다. 2번의 노동위의 핵심은 '시간강사규정'이었다. 우리학교 시간강사규정 제 3조에는 ▲1항.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항. '본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재적 중이며 2학기 이상 수료한 자' 등이 시간강사로 위촉될 수 있는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우리학교 정치학 박사 과정으로 2학기 이상 재학한 채 강사는 2항 조건에 해당되며 시간강사로 위촉될 수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것은 제 7조에 있다. 7조 1항에서 '시간강사의 위촉은 학기단위로 하되'라고 밝히고 있고, 2항에는 '연속 4학기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2항에도 불구하고 3항은 '박사학위 소지자, 타 대학 전임교원 등, 사유서를 첨부하여 별도로 결재를 득하면 4학기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연속하여 최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채 강사는 7조 3항과 같이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아직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박사 수료 상태'이다. 결국 후마 측은 7조가 명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가 없는 채 강사에게 4학기를 초과하여 수업을 배당함으로써 스스로 규정을 어긴 셈이 되어버렸다. 채 강사는 "당시 중노위를 준비하며 4, 8학기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하지만 학교는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았고 이미 많은 시간강사들이 4학기를 초과해 강의를 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채 강사는 "이 조항은 학교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어길 수 있는 조항이고 좋게 말하면 융통성 있게 강의를 맡겼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학장은 "엄밀히 따지면 나와 전임 학장이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것은 맞다"라며 "하지만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타 학교에서도 관례상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지노위·중노위에서는 채 강사가 제기한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더불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회피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채 강사는 "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이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판결이 아니다"라며 "부당 해고라는 진실규명을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유정완 학장은 TF운영을 위해 채효정 시간강사의 공개사과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채효정 시간강사는 공개사과는 결국엔 후마에 굽복하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지난 5월 교협에서 제시한 TF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양 측의 입장이 아직까지 상이하고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경우 법적인 차원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신문은 지난 보도에서 <관련기사 : 1603호 3면>, <관련기사 : 1607호 7면> 대학본부 측이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을 강조해왔다. 채 강사 또한 "여기서 공개 사과를 하게 되면 결국엔 굽복하게 되는 것이 되고 앞으로 일하게 될 시간강사에게 이러한 관행을 도물림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듯이 이번

논란은 채 강사 한 명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2016년 2학기 기준 우리학교의 871명 시간강사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간 유 학장은 이번 인터뷰를 포함한 지난 인터뷰에서도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유 학장의 말에도 불구하고 양 측의 상이한 입장으로 인해 모든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TF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학본부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채 강사와의 갈등이 아닌 더 많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하는 것이고 이미 당시자인 유 학장

한 공감한다고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우리학교 '시간강사규정'이다. 제10조(해촉)에선 '시간강사는 강의하는 학기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채 강사는 "2학기 기준 11월 말 혹은 늦어도 12월 초까지 통보를 해줘야 다음 학기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통보하지 않아도 되니 시간강사들은 다음 학기 위촉 여부를 알 수 없는 채 강의 종료 전 학교 측에 문의를 하고, 타 대학의 시간강사 자리를 알아봐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된 제3조(4학기 규정), 제7조(8학기 규정)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채 강사의 사례와 같이 이미 후마 측은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의 직종으로 분류, 2년을 초과하여 고용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돼 사실상 4학기 이상 고용이 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또한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 별도로 초과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있다. 이를 참고할 때 기존 시간강사에게 적용하던 4학기, 8학기로 제한하던 기간을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 번 보도에서도 밝혔듯이 학기 종료와 동시에 중지되는 교내 와이파이 이용, 중앙도서관 이용에 관한 것이다. 규정에서 '시간강사의 위촉은 학기 단위로 하되, 1학기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라고 밝히고 있다. 시간강사 중 다음 학기 강의를 위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하계·동계 방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교내 중앙도서관을 이용해 다음 학기 강의를 준비 혹은 교내 와이파이조차 쓸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전체 대학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교내 시간강사 강의료(대학알리미 공시자료 기준 2016년도 우리학교 : 50,721원, 전체대학 평균 : 55,000원), 강의료 준비 공간 부족 등이 있다.

이매일 '해촉'통보가 이뤄진지 곧 1년이 된다. 이 기간 동안 결국 양 측의 상이한 입장만 다시 확인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관한 논의는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학기 TF 요구를 받아들여 처우 개선에 힘썼다면 당장 이번 2학기 시간강사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었던 시간이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월 둘째 주(11.07~11.11)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취업·진로 준비!! 취업진로지원처와 함께 하세요.'

1. 기업체 채용행사 및 취업특강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KB금융권 설명회	11.07(월) 14:00~16: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청년취업카데미(비케팅)리서치설명회	11.08(화) 14:00~16: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증인기업 힘든피니션 설명회	11.09(수) 14:00~16:00	청운관 B117호	
이랜드 외식사업 채용설명회	11.09(수) 14:00~16: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국내외 항공사 채용면담	11.09(수) 13: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해외취업 및 대우의 Global YBM(벽정창)	11.09(수) 11:30~13:30	청운관 B117호	취업특강

◆ 참가방법 : 사전 신청 필수(현장 당일까지 가능) 종합 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연수 신청 - 해당 설명회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신청 후 학생여행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전 신청 학생 및 당시 현장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자는 당일 해당 장소 출입문쪽에 비치 함.

◆ 출석 협조금 발급 :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불급 및 배부

* 1인당 신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출입문쪽에 비치함

◆ 2. 취업진로지도 및 컨설팅 (취업상담)

상담유형	일시	컨설턴트	장소	신청방법
개인	월요일 ~ 금요일	이민우(온선증)	오비스홀 354호-356호	
		박언경	제법학관 107-2호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성적/상담/메뉴'에서 신청
상담		홍상기	청운관 6번 상담실	

◆ 대상 : 본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상담 대상자 의무 : 취업준비금지자(취업준비금지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 - 후 각 1회(총 2회) 필수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취수 불가(상담 당일 전까지 가능, 취수 시 전화 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4시간 출력하여 지원될수

◆ 3. 모의면접

◆ 대상 : 본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면접관 : 이민우(온선증), 박언경, 홍상기 컨설턴트(각 컨설턴트별 1회 진행)

분류	일시	면접관	장소	신청방법
모의 면접	11.09(수) 16:00~18:00	박언경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성적/상담/메뉴에서 신청

◆ 4. 중간기업 힘든피니션 바로 알기 설명회

◆ 대상 : 본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일시 : 11.09(수) 14:00~16:00 / 청운관 B117호

◆ 상세내용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또는 취업진로지원처 전화 문의(02-961-0167~8)

◆ 자체한 시장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해 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kn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nujob>

연락처 02-961-0167~8, job@knu.ac.kr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처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2016학년도 2학기 기초교양 이수면제 신청안내

1. 신청·서류 제출 기한

2016.12.01(목) ~ 12.09(금) 17:00까지

2. 접수방법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 신청)·연수 신청·기초교양 이수면제 신청의 내용 작성 및 신청(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후 서류 제출(청운관 208호)

3. 면제기준 및 자격

학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의 2016학년도 2학기 기초교양(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 안내 참고

4. 유의사항

기·2016-2학기 현재 해당과목을 수강중인 자, 학점포기자는 신청할 수 없음

나. 본 제도는 일정정보보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학점은 부여하지 아니함

다. 신청자격이 있더라도 본 이수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목이수를 면제받을 수 없음

〈기초필수 영어·영어 이수면제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2014~2010학번으로 2016~2학기 재학생

2. 이수면제과목

기·기초교양구 핵심교양 글쓰기 (2004~2010학번 해당)

나. 기초교양구 핵심교양 대학영어 (2004~2007학번 해당) 또는 English Reading & Discussion (2008~2010학번 해당)

다. 기초교양구 핵심교양 전공영역 (2004~2007학번 해당)

라. 기초교양구 핵심교양 전산영역 (2004~2007학번 해당)

〈기초필수 대학영어 이수면제 신청 안내〉

1. 신청대상